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 기준

[시행 2021. 3. 1.]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0. 30.,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2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020-240호, 2020. 10. 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과정 세부이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의 세부 이수기준란 개정 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21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21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 6. 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 7. 13.) 단, 2008-119호(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 3. 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 11. 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 9. 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 10. 1.)
  13. 2017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 12. 23.)
  14. 2018~2020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7-126호(2017. 8. 30.)
-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찾아보기 (유의점 및 서식)



### 〈유의점〉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25
교사자격증 박탈 및 취소 요령	36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	82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17
교원자격 검정 실시 기관의 원칙	13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 사항	19
교원자격 정정 사항 보고 관련	34
교육경력 인정 관련	48, 49
교육대학원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104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107
교육대학원 입학생 모집시 유의사항	101
교육대학원 자격검정시 유의사항	109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관련 사항	106
교육대학원 학점인정 범위의 적용	10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6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유의점	73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66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작성	9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 유의점	95
국가기술자격종목 관련 참고사항	137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의 업무 처리	62
나이스(neis)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35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범주	128
대학에서 무시험검정 시 작성 서류	18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시 검정	21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무시험검정 유의사항	57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검정 유의사항	32, 47
부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58
상급자격 검정 시 유의사항	32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141
연계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5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유의점	73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75
자격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31
전공학점 중복인정 관련 유의사항	62
중등7호 자격기준 대상자의 검정 유의점	92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130
특수학교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131
특수학교 부전공 이수자체가 불가한 경우 사례	132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관련 유의사항	122
현직교사의 범위	110

### 〈법정서식〉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39
영문 교원자격증(교육청용, 대학용)	40, 41
영문 교원자격 유효확인서	42
교원자격증 서식	328~331
교원자격증발급대장	332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333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334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33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336
자격연수이수명단 통보 서식	337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338
신상명세서(앞쪽, 뒤쪽)	339, 340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341

###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기본서식〉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예시)	342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 증명서	345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346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346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347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48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49
교육실습결과보고서	350
<b>경력인정증명서(예시) *교육실습면제대상자용</b>	<b>351</b>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52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352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354
심사내역표	355
실기교사 심사내역표	356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357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58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358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 현직교사)	359
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 포함) 일치증명서	359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350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351

[서식 5-1]

**경 력 인 정 증 명 서(예시)**

성 명	
생년월일	
학교(기관)명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p>위 사람은 (위탁급식업체)의 (영양사)로서 상기 기간 동안 본교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 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교장 인</p>	

- ※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 정교사)의 경우 위의 서식을 참고로 활용할 것
- ※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위의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